

제안 설명서

설 명 자 : 총무과장

■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(안)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■ 달서구·서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구마고속도로 서편에 위치한 죽전동(성서4동) 28필지 0.061km(와룡산 일부로서 거주민은 없음)는

○ 관할 행정구역인 성서4동과 동떨어지게 되어 행정수행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즉, 서구와의 새로운 경계로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용산동에 편입코자 합니다.

■ 구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市에 승인을 신청, 승인을 받은 후 구조례를 개정·공포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각종 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동 간 경 계 조 정 (안)

의 안	95-22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5. 4.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총 무 과)

1. 제안이유

- 대통령령 제14629호('95. 4. 20 시행)에 의거 구·군간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성서 4동 관할구역인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지역, 즉 죽전동(성서4동) 1번지의 27필지 0.061㎞²는 불합리하여 동간 경계를 조정 용산동(성서1동)에 편입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2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24호(동간 경계조정의 권한을 내무 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위임)

3. 주요골자

- 죽전동(성서4동) 관할구역 중 28필지를 용산동(성서1동) 관할로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조정

4. 설명서 1부 : (별첨)

동 간 경 계 조 정 (안) 설 명 서

대상지역 및 조정(안)

-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(성서4동)지역을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용산동(성서1동)으로 조정

조정규모

- 28필지 0.061km²

조정사유

- 우리 구와 서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지역은 현재 관할행정구역인 성서4동과 동떨어지게 되어 행정수행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용산동(성서1동)에 편입코자 함.

공간 경계조정 도면

